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74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9. (박다미 의원 등 11인)

나. 상정의결

-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박다미 의원)

가. 제안이유

- 난임으로 고통받는 강남구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지원정책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난임극복 지원사업(안 제4조)
-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안 제5조 및 제6조)
- 시술 및 한방 난임치료 대상(안 제7조)
- 치료비 지원 사업(안 제8조)
- 치료비의 청구 및 지급(안 제9조)
-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 지역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7조)

○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20조)

다. 참고사항

○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예산조치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2020년 본예산 350백만원 편성

- 한의약난임치료지원 2020년 본예산 149백만원 편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모자보건법」에서는 “난임”(難妊)을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으로는 늦어지는 결혼나이, 취업난, 경제여건 등 사회 구조적인 원인과 함께 술, 담배의 생활습관, 기름진 식단, 운동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생식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난임부부는 약 15%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음.

-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난임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인식이 여성에게 맞춰져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실제로 난임치료시술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여성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남성의 원인비율을 전체 난임의 40%로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남성난임에 대한 인식결여와 남성들의 소극적인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¹⁾은 0.98명, 우리구는 2016년 0.80명에서 2018년 0.63명으로, 출생아 수는 4,122명에서 2,94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정부에서도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난임부부 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나 한방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1)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등 상호 갈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용어를 정의한 바 「모자보건법」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보임. 제3호 ‘시술’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²⁾를, 제5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³⁾를, 제6호 ‘난임진단’은 「의료법」 제17조⁴⁾를, 제8호가목 ‘난임치료 수행기관’ 중 하나는 「모자보

2)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3)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생략)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생략)

3. 병원급 의료기관 (생략)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 (생략)
- 마. 종합병원

4)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생략],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

건법」 제11조의3⁵⁾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과 시책을 발굴하고 강구하도록 책무를 부여 하고 있음.

- 안 제4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제1항에서는 난임극복을 위한 사업범위를 「지방재정법」 제17조⁶⁾에 따라 직접규정한 것으로 보임. 다만, 난임극복 지원사업 범위가 적절한지는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제2항에서는 난임치료 사업에 양방과 한방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사업성과의 측정이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치료비의 지원 등)제1항에서는 지원대상을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실혼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와 구조적병변⁷⁾은 지원에서 제외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임. 제2항에서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제1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조적병변

가) 남성 요인(malefactor): 선천성 양측 정관 형성부전증, 사정관 폐쇄, 고환, 부고환, 정관, 등의 이상

나) 난소 기능 저하(decreasedovarianreserve)

다) 배란 장애(ovulatorydisorder)

라) 난관 손상, 결찰(매듭), 또는 난관주위 유착(tubalinjury,blockage,orparatubaladhesions), 난관(나팔관)폐쇄, 난관 섬모상피 이상

마) 자궁경관 및 구조 이상: 선천성 자궁기형, 골반강 유착

바) 자궁인자(uterinefactors): 자궁근종, 자궁내유착, 자궁내막용종

사) 면역학적 이상(immunologicaberration), 감염(infection), 심한 전신적 질환(seriousimmunologicillnesses)

아) 원인 불명(unexplained): 난관, 난관주위 유착을 동반하지 않는 자궁내막증 포함

호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난임시술 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이 종료되는 경우에 추가로 지원하려는 것임. 제2호의 양방 남성 난임치료와 제3호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다만,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제3항에서는 보건소의 사업특성상 국·시·구비 매칭사업과 연계되고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어 치료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임. 제4항에서는 양방 및 한방 난임지원사업 등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 이미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난임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6조(난임치료의 수행기관 지정 등)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38)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과 우리구 관내의 비뇨기과 및 한방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난임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지원결정통지서 교부 등)제1항의 치료비 지원에 따른 서류제출은 행정집행적 성격으로 보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고 제2항에서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식을 규칙에서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임. 제3항에서 3개월 이내에 난임치료를 받도록 한 것은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성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기간이 적절한지는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 안 제9조(치료비의 청구 및 지급)에서는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치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적인 행정집행적 성격으로 보여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안 제10조(치료비 지원의 중단)에서는 난임부부가 자격 등이 상실되는 경우 치료비를 중단하도록 하고 난임치료를 포기하는 경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됨.

- 안 제11조(치료비의 환수)에서는 중복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환수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안 제12조(난임극복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지역협의체의 설치 근

8)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와 기능을 규정하였음. 제2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이미 「모자보건법」 제11조의3⁹⁾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선정과 취소는 법령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2항제3호에서는 난임치료 대상자 중 시술대상자의 선정을 제외한 것은 이미 「모자보건법」에 따라 시술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임.

- 안 제13조(지역협의체의 구성)부터 제19조(수당)까지는 협의체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특이점은 없다고 보여짐.

- 안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에서는 협의체 위원이나 업무 담당공무원 등이 난임부부의 내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바 적절한 규정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는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한 것임.

- 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체외수정 시술비용 지원은 난임사업의 일부로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9)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5조제2항의 구조적 병변을 단서 조항으로 기재하였는데, 사실 구조적 병변 때문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난임 부부들도 많으므로 수혜자의 확대를 위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떠한지.

○ 제정 시에는 건강보험이나 개인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행 된 후에 지원하는 것을 염두하고 제정하였지만, 타 지자체 조례 검토 결과, 해당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조례가 다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담회를 거친 후 수정 가능하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음.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74호

제안일자 : 2020.6.11.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 중 치료비 지원 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함.

2. 수정주요내용

- ‘구조적 병변’ 관련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치료비 지원 등) ① (생 략)</p> <p>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난임부부의 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u>다만, 난임부부의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u></p> <p>1. ~ 3.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5조(치료비 지원 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 ----- ----- -----</p> <p>- . <단서 삭제></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박다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4
----------	-----

발의연월일 : 2020. 5. 29.

발 의 자 : 박다미·이상애·허순임·
문백한·전인수·이호귀·
한용대·안지연·김진홍·
최남일·복진경(이상11
인)

1. 제안이유

난임으로 고통받는 강남구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경감과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지원정책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난임 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안 제4조)
- 나.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시술 및 한방 난임치료 대상(안 제7조)
- 라. 치료비 지원사업(안 제8조)
- 마. 치료비의 청구 및 지급(안 제9조)
- 바.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 사. 지역협의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17조)
- 아. 비밀누설의 금지(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모자보건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2020년 본예산 350백만원 편성
 : 한의약난임치료지원 2020년 본예산 149백만원 편성
-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라. 합 의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혼 및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 (難妊)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국민건강보험 적용”이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시술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6. “난임진단”이란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 등을 말한다.
7.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8. “난임치료 수행기관”이란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가.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
9. “치료비”란 난임부부가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이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부부를 위한 공연, 강연회 등 힐링 프로그램 운영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

② 동일한 난임치료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강남구 자체사업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치료비 지원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난임부부의 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난임부부의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의 추가 시술 지원
2. 양방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성
3. 한방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

③ 제2항의 치료대상에 따른 치료비 지원액, 치료기간, 치료횟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난임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치료를 위하여 난임치료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난임치료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해

당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2. 난임치료 수행기관이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업·「의료법」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

제8조(지원결정통지서 교부 등) ① 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난임부부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난임치료 수행기관에 제출하여 난임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9조(치료비의 청구 및 지급) ① 난임치료 수행기관은 난임부부의 치료비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구민 여부,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치료비 청구 및 지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치료비 지원의 중단) ①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중도에 임신이 되는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치료비의 환수) 난임부부 또는 난임치료 수행기관이 중복지원을 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난임극복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난임극복사업 등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난임극복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난임극복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난임치료 수행기관의 선정 및 취소. 다만, 제2조제8호가목은 제외한다.
3. 난임치료 대상자의 선정. 다만, 시술 대상자는 제외한다.
4. 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역협의체의 구성) ①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2년 이상 난임관련 업무에 종사한 의료인 및 대학교수,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4조(지역협의체의 운영) 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체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

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지역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해당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협의체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협의체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수당)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협의체에 참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난임치료와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용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은 삭제한다.